



날 짜	2021년 4월 12일 (월)
제 목	[논평] 사모펀드 사태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총 4 쪽)
문 의	사무국 Tel 02-763-5052 / Fax 02-587-9731 / 전자메일 ser@ser.or.kr

국민연금, 사모펀드 사태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검토해야

국민연금, 불법경영에 따른 손해보전 및 관련자 책임 묻는 대표소송 적극 활용 필요
사모펀드 관련 제재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 손해에 대해 이중대표소송 등 제기해야

1. 지난주 목요일(4/8)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는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3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당시 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 등을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3월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고, 최근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지만, 금융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실과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대상회사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책임추궁에 따른 피해 예방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와 국민연금에서는 내부적으로 주주대표소송 사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제2차 기금위 회의의 논의안건에 따르면 올해 수탁자책임 활동 추진 계획의 하나로 ‘주주대표소송의 실행력 확보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주주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 포함)의 요건 등을 참고하여 소송 제기할 사안을 검토·결정하는 등 실행력 확보방안을 상반기 중 기금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자체 스투어드십코드를 채택했고, 그 이행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서 구체화 하고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투자자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명시되어 있고(원칙4 수탁자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2018년 7월) 및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2019년 1월)에 그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은 기금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이사·감사 및 업무집행관여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 뿐 아니라 이사 등이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 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 소제기기 가능하며, 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소가능성, 소송실익(효과 대비 비용) 등과 함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행위가 판결에서 확정되었는지, 손해액이 관련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대표소송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제소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송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소제기의 결정은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위가 결정하며, 그 실무는 수탁자책임실과 기금법무팀에서 맡도록 하였다.

3. 하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대상회사의 분식회계로 직접 손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1건 있지만, 투자대상회사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전무하다. 주주대표소송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해당되며, 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또는 수탁위가 언제든지 대표소송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1월 공정거래법 위반 21개 회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와 2014년 5월 효성의 위법배당 관련 손해보전을 위한 소제기 요청을 국민연금에 하였고, 그 전인 2004년 SK해운 횡령 건, 2005년 대상 횡령 건, 2008년 현대차 비자금조성 및 계열사 부당지원 건 등에 대해 국민연금에 주주대표소송 원고참여를 요청했지만, 국민연금은 회신을 하지 않거나 대표소송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하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며, 개정된 상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투자대상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이중대표소송)를 할 수 있는 바,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 될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회복과 더불어 상당한 피해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수탁위는 상반기 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사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미비와 같이 범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

에 대하여 국민연금이 우선적으로 대표소송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과거에는 우리은행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주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29일부터 다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9.80%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책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의 제재절차가 종료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사건의 경우 회사가 부과 받은 과태료 197.1억원과 167.8억원,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막대한 규모의 배상액과 업무정지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등은 고스란히 회사에 전가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4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감사위원회에 이 사건의 책임이 있는 손태승 전 행장 등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추궁에 나설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최근 제재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라임펀드의 1조 6천억원대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판매증권사 제재(금융위 의결만 남음) 및 판매은행사 제재(금감원 제재심 진행), 옵티머스펀드·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판매금융사 제재도 이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개인주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결국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유의미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대상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행위는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종료 되는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만일 다른 원고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국민연금의 직접지분이 없더라도 투자대상회사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표>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사태 관련 주요 제재 현황

금융회사	제재일	제재 내용	제재 대상 임원	회사의 손해	국민연금 지분율	비고
우리은행	2020.3.4.	DLF 내부통제 미비 등(과태료·업무 일부 부정지 6개월·임원 제재 등)	손태승(문책 경고), A임원(주의적경고)	과태료 197.1억원 +α	우리금융지주 지분 9.80%	이중대표소송 가능
	2021.4.8.	라임펀드 환매중단 제재심 의결(과태료·업무 일부)	손태승(문책 경고 상당)	과태료+α		이중대표소송 가능

		정지 3개월, 임원 제재 등)				
하나은행	2020.3.4.	DLF 내부통제 미비 등(과태료·업무 일부정지 6개월, 임원 제재 등)	함영주(문책 경고), 지성규·B 임원(각 주의적경고)	과태료 167.8억원 + α	하나금융지주 지분 9.88%	이중대표소송 가능
	제재심 의결 (2020.3.25)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업무 일부정지)		업무정지에 따른 손해	하나금융지주 지분 9.88%	이중대표소송 가능
신한금융지주	금감원 제재심 진행중	라임펀드 환매중단 (기관경고)	조용병(주의적경고)	인허가 제한 등에 따른 손해	9.81%	
신한은행	금감원 제재심 진행중	라임펀드 환매중단 (과태료·업무 일부정지·임원 제재 등)	진옥동(문책 경고)	과태료+ α	신한지주 지분 9.81%	이중대표소송 가능
신한금융투자	금융위 제재절차 진행중	라임펀드 환매중단 (과태료·업무 일부정지, 임원 제재 등)	김형진(직무정지), 김병철(주의적경고)	과태료+ α	신한지주 지분 9.81%	이중대표소송 가능
중소기업은행	제재심 의결 (2020.2.5)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과태료·업무 일부정지 1개월, 임원 제재 등)	김도진(주의적경고), C임원(감봉3개월)	과태료+ α	6.91%	
KB증권	금융위 제재절차 진행중	라임펀드 환매중단 (과태료·업무 일부정지, 임원 제재 등)	윤경은(직무정지 상당), 박정림(문책 경고), 김성현(주의적경고)	과태료+ α	KB금융지주 지분 9.93%	이중대표소송 가능

* 제재 절차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건 중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금융사로 한정

5. 한편,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한다면 그 대상을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특정 사건으로 한정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대표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와 지배주주의 배임·횡령과 같은 불법행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이 기업가치 훼손이 있는 투자대상회사의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원고로서 참여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